

# 국민은행 본점 부문검사 결과

## I. 검사실시 개요

- 검사종류 : 국민은행 본점 부문검사
- 검사실시기간 : 2014.5.19~2014.6.5.(14영업일)

## II. 주요 지적사항

### ① 주전산기 기종검토 관련 컨설팅보고서의 왜곡 보고

- 은행의 임직원은 경영의사결정 관련 정보가 임직원에게 전달 및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,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데도,
- 국민은행은 주전산기 검토를 위한 외부 기관의 컨설팅 보고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컨설팅 보고서 작성자에게 특정 기종(유닉스)에 유리하게 보고서를 작성토록 요구하여
  - 최종 컨설팅보고서('13.10.30.)에서 주전산기의 기종전환(메인프레임 →유닉스) 리스크는 축소토록 한편, 메인프레임에 유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유닉스에 유리한 내용은 과장하도록 하였으며,
  - 이와 같이 왜곡된 컨설팅보고서를 기초로 '13.10.31. 제3차 SC (Steering Committee)에서 주전산기 기종 전환방침을 결정하였음

## ② 주전산기 전환을 위한 성능검증(BMT) 결과 및 소요비용 허위보고

- 은행은 정보처리시스템과 관련하여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, 비용 대비 효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,

- 국민은행은 주전산기 전환과 관련하여 성능검증(BMT) 결과 및 소요비용 등을 이사회(14.4.24.)에 허위·왜곡 보고하여, 이사들이 객관적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경영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였음

- ① 성능검증 결과는 소요비용·안정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주전산기 기종 변경을 재검토해야 할 만큼 매우 중대한 사안인데도

- CPU 과부하시 안정성 등에 대해 아예 검증조차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능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고 이사회(14.4.24.)에 허위보고

( i ) 메인프레임 프로그램의 유닉스로의 자동전환률이 99%라고 사실보다 과장하여 보고

\* 자동전환된 프로그램을 거래에 적용하였을 때 오류 발생률(거래오류율)이 4%에 달함(국민은행 일평균 거래량 1억건 중 매일 4백만건에서 오류가 발생함을 의미)에도 목표달성이라고 보고

( ii ) 초당 거래건수(TPS) 증가시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면밀한 분석 없이 “프로그램 및 데이터 최적화 작업으로 해결 가능”하다고 보고

( iii ) 이사회 배포자료인 ‘유닉스 결정 이후 추가 검증사항’에서 “성능 및 결과값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”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

- ② 성능검증 결과, 유닉스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이 3,055억원으로 당초 이사회(13.11.15.)에 보고한 예산(2,064억원)을 크게 초과하자,

- 시중은행에서 사용된 전례가 없고 성능도 검증되지 않은 기종의 가격을 마치 성능이 검증된 것처럼 왜곡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견적금액을 축소(1,898억원)하여 이사회(14.4.24.)에 보고

( i ) 시중은행에서 채택한 사례가 없고 성능검증(BMT)도 실시되지 않은 유닉스 구조의 견적금액(1,998억원)을 기초로 전환비용을 산정하였으면서도 BMT가 실시된 유닉스 구조의 견적금액을 토대로 산정한 것처럼 왜곡

( ii ) 동 견적금액(1,998억원)에서 외주 용역비 100억원을 임의로 축소

- ③ **IBM의 제안가격(1,540억원)**을 보정함에 있어, 부당한 방법으로 정당 보정금액보다 **60억원이상 높은 금액(1,950억원)**으로 **과다 보정하여 경영협의회('14.4.23.) 및 이사회('14.4.24.)에 보고**

- (i) 여타 유닉스 업체(오라클, HP)가 실시한 BMT 비용은 당해 업체들이 부담함이 분명함에도 **IBM 제안가격에 임의로 가산(+60억원)**
- (ii) IBM 제안가격에 소프트웨어 비용을 추가할 때에는 메인프레임은 기존 체제를 계속 이용하는 것이므로 **초기비용을 배제**해야 하는데도, 이를 포함시켜 소프트웨어 비용을 과다산정

-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장은 '13.7월 취임 이후 감독자의 위치에서 주전산기 전환사업에 대해 **11차례에 걸쳐 보고**를 받았음에도,
  -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상기 위법·부당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사태 확대를 방치하였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

### III. 조치 내용

기 관 : 기관경고('14.8.28. 기초치)\*

\* '14.8.28. 기초치하였으므로 기관경고 사유 추가 통보

임직원 (총 17명)

- 문책경고 1명, 주의적경고 1명
- 정직 1명, 감봉 1명, 견책 2명, 주의(상당) 11명